자료관리규칙

제정 2009. 7. 27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 정보자료의 수집, 정리, 이용 및 보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료관리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진흥원의 자료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자료"라 함은 진흥원의 연구활동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서, 연구개발자료(이하 "연구자료"라 한다), 연속 간행물, 비도서자료 및 멀티미디어자료 등을 말한다.
- 2. "장서"라 함은 연구활동과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수집되어 등록된 자료 중 자산적 가치가 있는 고정자산을 말한다.
- 3. "제거"라 함은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폐기처분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제적"이라 함은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장서를 진흥원의 자산 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자료관리부서장"이라 함은 진흥원 직제에 의하여 자료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장을 말한다.

제2장 자료의 수집

- 제4조(수집방법) ①진흥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, 기증,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.
 - ②제1항의 구입에 의한 자료수집은 각 부서의 구입요청에 따라 자료관리부서장이 구입한다.
- **제5조(구입요구)** ①각 부서에서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구입신청서를 작성 하여 자료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. 다만, 외부에서 구입하는 자료로서 자료관리부서

- 에서 일괄구입할 경우 자료 소요시까지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관리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직접 구입할 수 있다.
- ②각 부서의 장이 해외 출장자에 의한 현지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자료를 직접 구입할 수 있다.
- ③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자료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자료를 자료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조(기증 및 교환) ①자료관리부서장은 국내외의 연구기관, 기업체, 공공기관 및 기타 단체와의 기증 및 상호자료 교환체제를 형성하여 제반 자료를 수집, 교환한다.
 - ②직원은 국내외 출장 또는 교육훈련 중에 자료의 획득에 노력하여야 하며, 진흥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자료는 출장복귀 후 출장(교육)중 수집자료목록과 함께 자료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(간행물의 납본) 다음 각호의 간행물을 발간하는 부서의 장은 동 자료를 컴퓨터 파일을 첨부하여 자료관리담당부서에 납본하여야 한다.
 - 1. 연구보고서(5부)
 - 2. 연수교재 등 교육교재(1부)
 - 3. 각종 Brochure 및 홍보자료(1부)
 - 4. 기타 수시간행물(1부)

제3장 자료의 정리 및 관리

- 제8조(등록) ①자료관리부서장은 진흥원에 수집된 자료중에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그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단행본, 연구자료, 참고자료, 정기간행물 및 기타자료로 구분하여 진흥원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.
 - ②「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부 서장은 동 규정 제16조의3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해당되는 연구성과를 등록할 수 있다.
- 제9조(분류, 편목) ①단행본, 참고자료의 분류는 L.C. 분류체계(미국의회도서관분류법)에 의하여 분류하고, 정기간행물은 지명에 의해서 자모순으로 배열한다.
 - ②연구자료의 분류는 작성내용 및 기술보호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며, 기술보호등급은 과제책임자 및 결재권자가 분류한다.
 - 1. 자료내용에 따른 분류
 - 가. 기술문서(TM): 연구수행중 생성되는 조사보고서, 규격서, 지침서, 시험 절차서,

노하우(Know-how) 등을 정리한 문서, 연구논문 등

- 나. 연구보고서 : 연구사업 종료시 수행결과를 요구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책으로 인쇄된 보고서
- 2. 기술보호등급에 따른 분류
- 가. A급 연구자료: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한 노하우(Know-How) 축적 및 재산적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분야 연구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자료로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직원만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며, 비밀자료는 보안업무내규 제3장 문서보안에 의거 처리한다.
- 나. B급 연구자료: 자체 보호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자료로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직원만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한 자료다. C급 연구자료: 연구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치 않으며, 외부인의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한 자료
- ③동서의 편목은 KCR3(한국목록규칙)에 의하고, 양서의 편목은 AACR2(영·미목록규칙)에 의한다.
- 제10조(관리 및 보관) ①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일반자료, 비밀자료, 연구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하다.
 - ②일반자료는 자료의 참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, 관리한다.
 - ③비밀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내규에 의한다.
 - ④연구자료는 영구보관·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호에 따라 보관·관리한다
 - 1. 연구자료의 작성부서는 연구자료와 [별지 제1호] 연구자료등록서를 자료관리부서 에 제출한다.
 - 2. 자료관리부서는 연구자료철의 표지 내면에 연구자료등록서를 부착한 후 자료관리 대장에 등록하여 형태 및 내용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.
 - 3. 연구자료중 첨부물(디스켓, 장치, 책자, 기구 등)의 경우는 그 표면에 당해 관련 자료의 관리번호를 표시하고 지정된 첨부물보관장소에서 당해 관련자료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다.
 - ⑤연구자료의 대내 열람 및 대출은 해당 자료의 소관부서에서 통제하며, 연구자료의 대외발표 및 제공시는 보안업무규칙 제48조(보안성 검토 대상 및 절차) 및 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에 의거 처리한다.
- 제11조(환경조치) 자료관리부서장은 장서의 방충, 방부, 훼손방지 등을 위한 관리상의 적합한 환경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관리책임) ①자료관리부서장은 소장자료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진다.

- ②개인에게 대출된 자료의 관리책임은 대출자 본인이 진다.
- ③연구과제수행을 위하여 장기대출된 자료의 관리책임은 해당 부서장이 진다.
- 제13조(장서점검) 자료관리부서장은 연 1회 장서점검을 실시하며, 필요시 추가 실시할 수 있다.
- 제14조(폐기) 소장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폐기할 수 있다.
 - 1.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써 제본 및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
 - 2.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
 - 3. 자료점검결과 자연망실로 인정된 자료
 - 4. 과년도 정기간행물 중 제본할 필요가 없는 자료
 - 5. 기타 폐기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자료
- **재15조(제적)** 자료관리책임자는 제14조에 의해 폐기된 자료에 대하여 기증 및 교환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후 폐기처분한다.

제4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

- **제16조(열람대상자)** 자료의 열람은 진흥원 임직원에 한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자료관리부서장은 진흥원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부 인사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.
- **제17조(열람시간)** 열람시간은 진흥원의 정상 근무시간내로 한다. 다만, 자료관리부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- 제18조(열람) 자료의 열람은 자료실내에 한하며 열람자는 자료열람대장에 기재하고 열람할 수 있다. 열람방식은 개가식으로 하며 열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그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.
- 제19조(대출자격) 자료의 대출은 진흥원의 임직원 및 자료상호대차협약 기관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서요구에 의하여 정부기관, 학계, 기타 산업체 등에 대출할 수 있다.
- 제20조(대출의 제한) ①연구자료, 비밀자료, 참고자료, 제본이 되지 아니한 간행물, 비도서자료 및 자료관리부서장이 대출할 수 없다고 인정한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대출제한자료 이외 자료의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는 다음과 같다.

- 1. 진흥원 임·직원의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, 그 밖의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자료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- 2. 대출가능도서의 수는 1인당 10권 이내로 한다.
- ③대출자는 대출받은 자료를 임의로 타인에게 재대출할 수 없다.
- ④대출자가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과하여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때에는 기 대출도서를 반납한 후에 다른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.
- 제21조(장기대출) 각 부서의 장이 장기대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장기대출할 수 있다. 다만, 자료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- 제22조(반납) ①자료관리부서장은 대출자가 대출기간이 만료되어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대출도서반납독촉장으로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.
 - ②자료관리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
 - 1. 대출자격 또는 신분을 상실하였거나 휴직하였을 경우
 - 2.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
 - 3. 기타 장서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
 - ③반납독촉을 받고도 기일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망실자료로 가주하여 변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23조(대출예약) 이미 대출된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예약 신청을 함으로써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.
- 제24조(변상) ①장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자료로써 변상하여야 한다.
 - ②자료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자료의 구입시가에 부대경비를 포함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구입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관리부서장의 산정판단에 의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5장 정보 서비스

제26조(정보의 제공) 자료관리부서장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조사 서비스, 온라인검색 서비스, 원문 서비스 등 이용 가능한 제반 수단을 통하여 신속, 정확하게 제공하다.

- 제27조(정보망의 구축) 자료관리부서장은 각종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, 이를 필요로 하는 유관기관과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다.
- 제28조(데이터뱅크 가입) 자료관리부서장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, 정확하게 검색,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 이외의 데이터뱅크 와 연결하여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- 제29조(간행물발간) 진흥원은 정보보호에 관한 기술정보를 진흥원내, 국내·외 유관기 관, 학계 및 산업계에 널리 전파 보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간행물을 발간하 도록 한다.
- 제30조(등록명의 등) 정부에 등록을 요하는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 그 발행 및 편집인은 진흥원 원장이 되며, 간행물 발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은 진흥원 소유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연구자료 등록서

| 작성자 결 | | 작성부서 | | 승인자 | | | 작성일자 | | | 페이지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|--|
| 제 번 | 출호 | 구년 | 는 연도 - | 일련번: - | <u> </u> | 출 (위 기 | 연 탁) 관 | | 변 코 | 경 드 | |
| 기 보 등 | 술 호 급 | 2. | A급 B급 | 기술보호 (A급에 한 | | | | | | | |
| 승인문서관리자 | | | | | | 등록역 | 일자 | | | | |
| 제 | 한 | 글 | | | | | | | | | |
| 목 | 영 | 문 | | | | | | | | | |
| 색 인 | 한 | 글 | | | | | | | | | |
| 어 | 영 | 문 | | | | | | | | | |
| 요 약 (300자 이내) | | | | | | | | | | | |
| 공동 작성자 | | | | | | | | | | | |
| 관 련 문 서 | | | | | | | | | | | |
| 배 포 처 | | | | | | | | | | | |

| 종합관리번호 | 보존등록일 | 확인 |
|--------|-------|----|
| | | |

[무단복제금지(로고) KISA Proprietary]

별지 제1호(TM 등록신청서) 작성요령

- 1. 작 성 자 : 연구개발자료를 작성한 사람의 성명과 ()안에 개인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다. 2인 이상인 경우 작성자란에는 대표자를 기재하고 "공동작성자"란에 나머지 작성자의 성 명를 모두 기재한다.
- 2. 작성부서 : 작성자의 소속부서를 기재하고, ()안에 부서명을 기재한다.
- 3. 승 인 자 : 연구개발자료를 검토 승인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다.
- 4. 작성일자 : 작성일자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. 예) 1996-08-01
- 5. 페이지 : 본문의 총 페이지수를 기재한다.
- 6. 제출번호
 - 가. 구 분 : 연구개발 생성부서 약칭을 기재한다. (예 : 연구기반) 나. 일련번호 : 각 부의 년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되 3자리 숫자로 기재한다.
- 7. 출연(위탁)기관 : 당해 연구개발자료 관련과제의 연구비를 부담한 기관의 공식 명칭을 기재하다.
- 8. 변경코드: 알파벳 순서별로 기재하되 I, O, V는 제외한다.
- 9. 기술보호등급 : 기술보호등급에 의한 분류의 해당번호에 "○"으로 표시한다.
- 10. 기술보호기간 : A급 연구개발자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문서의 기술보호기간을 명시한다.
- 11. 승인문서 관리자 : 각 부의 부서장이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부서장이 승인문서관리를 위한 별도 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부서장이 서명할 수 있다.
- 12. 문서번호 : 각 부의 독자적인 문서번호 부여체계에 따라 부여된 문서번호를 기재한다.
- 13. 등록일자 : 승인문서로서 승인문서관리자에게 등록된 일자를 작성일자 기재요령과 같이 기재한다.
- 14. 제목 : 한글인 경우 "한글"란에 영문인 경우 "영문"란에 기재하며, 필요한 경우 두가지를 병기할 수 있다.
- 15. 색인어 :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어를 3[~]5개 단어로 한글인 경우 "한글"란에 영문인 경우 "영문"란에 기재한다.
- 16. 요약 : 연구개발자료의 내용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30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한다.
- 17. 관련문서 : 관련되는 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번호, 제목과 년월일을 기재한다.
- 18. 배포처 : 문서가 배포되어야 할 부서를 기재하고, 외부기관인 경우에는 기관명 또는 약칭을 기재한다.
- 19. "종합관리번호", "보존등록일", 및 "확인"란은 종합관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.